의안번호	제 92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월 일 (제 296 회)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12월 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92호

제출연월일 : 2010년 12월 3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도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「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」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(안 제2조) 및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(안 제3조)

○ 헌혈자원봉사활동등에 대한 지원(안 제4조) 및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장려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 이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
2. 헌혈에 관한 교육·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
3.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도지사는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조(헌혈장소의 설치지원) 대한적십자사 또는 지사에서 헌혈을 위한 장소 및 필요한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협회·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은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도지사는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표창등을 할 수 있다.

제5조(헌혈홍보 및 정보제공) 도지사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

1.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
2.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
3.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

제6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혈액관리법

제4조 (헌혈권장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혈액관리법 시행령

제2조 (헌혈의 권장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혈액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 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.

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

제4조(사무소)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.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) ①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.